

교회 헌법 검토 특별위원회 보고서
(CHURCH ORDER REVIEW TASK FORCE REPORT)

내부 요약문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북미주 개혁교회에서는 말씀 사역자의 교회 및/또는 교단에서 사직(release) 하는 문제와 흔히 “특수 목회”로 불리는 말씀 사역자의 청빙 및 감독에 관한 문제와 우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중 자주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교회 헌법 제17조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과 관련된 결정들이 목사와 교회 양측 모두에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을 때, 목사에 대한 감독 및 사직에 대한 보다 명료한 지침과 교회 헌법의 개정이 지교회와 노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2년 총회는 교단 이사회에 교회 헌법 검토특별위원회 (CORTF)를 임명하여 “교회 헌법 8조, 12조, 13조, 14조, 16조, 17조 및 관련 보칙을 목사-교회 지원부(현 Thrive교회사역부)와 관련자들이 함께 대화하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 갈등의 시기에 목회자와 교회에 더 명료한 지침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목회 전환과 특수 목회로 사역하는 목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지원을 개발하는” 임무를 지시했다.

교회 헌법은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교회, 목사와 사역 리더들이 지침을 지혜롭게 적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회 사역에 대한 특정한 지침을 제공한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와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다루는 문제에 연루된 목사와 카운실, 노회와 기타 관련자들이 우리 교회 헌법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더 깊고 건강한 관계로 이끄는 도구, 즉 좋은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할 것을 권면한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말씀 사역자의 직분은 교회 지도자의 자리로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개인적인 느낌의 내적 소명과 교인들을 통한 교회의 외적 부름, 즉 청빙으로 형성된다.

특정 사역을 포함한 목회 청빙은 단순히 개인적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 카운설, 노회가 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CRC의 신학과 전통은 목사의 안수를 개인이 아닌 직분과 연결한다.

특별위원회의 작업이 익숙해지면서 회원들은 교회와 세상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금세 알아차렸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문화적인 것이었다. 다른 일부는 교회 혹은 개혁주의 교단 내 관습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 중 많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변화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변화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오늘날의 세상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 내 사역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었다. 첫째, 특별위원회가 “지역 교회 외(noncongregational)”라 부르는 상황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을 감독, 책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12조 및 13조에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에 속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둘째, 사역의 전환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특히 말씀 사역자가 특정 목회나 교단 전체 안수직에서 해임(release)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14조 및 17조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에 속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2조와 13조는 CRC에서 말씀 사역자를 청빙하고 감독하는 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CRC 교회를 직접적으로 섬기지 않는 목사들의 사역을 지역 교회에서 지원하고 감독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 지역 교회 외 사역을 섬기는 목사의 교적증명(credentials)은 교회에게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CRC 내 증가하는 다양성과 목사가 부를 받는 사역 유형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는 특히 그렇다. 모든 목회는 시간이 걸려 형성되는 관계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어떻게 청빙의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관계 형성을 할 것인지, 지역 교회 외 사역에서 섬기는 목사를 축복하고 격려 할 것인지, 교적증명 해주는 목사를 통해 청빙 교회 사역의 “범주”가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인식하는지에 관한 방법으로 12조와 13조에 관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이다.

특정한 청빙이나 CRC 목회 전반에서 해직(release)과 관련된 14조 및 17조는 유용한 지침이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모든 분리(교회와 목사 간, separation) 상황에 적용되는 답을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러한 분리는 목사와 카운실과 노회와 총회 대리인의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와 목사 모두 상처를 치유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양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회 헌법 검토 특별위원회는 2024년 총회에 다음 사항들을 건의하는 바이다.

- a. 목사 청빙, 감독 및 해직과 관련된 원칙들을 재확인한다.
- b. 감독에 대한 공동 언약을 포함한 방법으로 지역 교회 외 사역에 임하는 목사의 지원과 책임을 장려한다.
- c. 교회 헌법과 보칙에 몇 가지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적인 양식과 총회 지침을 제공함으로 분리 동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포함한 목사와 교회 사이 분리 절차와 목사의 복귀 절차를 명확히 한다.
- d. 교회 헌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성령으로 분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함을 교회와 노회에 상기 시킨다.